

제313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임실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11. 17.

임실군의회 의장



1. 제 안 이 유

다자녀 가구 상수도 요금 감면 및 노후 옥내급수관에 대한 개선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다자녀 수용가의 수도요금 경감 및 세대내 깨끗한 수도물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 가. 체납자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관련 조문 삭제(안 제33조 5호, 안 제38조 제2항)
 - 1)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규정 삭제(안 제33조 5호)
 - 2)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징수 규정 삭제(안 제38조 제2항)
- 나. 다자녀가구 요금감면 적용 규정 신설(안 제35조 제1항)
- 다.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비용 지원 내용 추가(안 제37조 제2항)

3. 참 고 자 료

가. 관련법령 : 『수도법』

나. 심사예고 : 2021. 11. 17. ~ 11. 22.(5일간)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바. 불 임 : 개정조례안

□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도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도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1. 7. 28.]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도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할 때에 그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도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물의 요금이 정하여지면 3개월 이내에 수도요금 생산원가, 요금부과 단가, 재원부족액, 부족 예산 충당 계획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일반수도사업자는 같은 법 제11조·제12조에 따른다. [신설 2013. 12. 30.]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신설 2010. 5. 25., 2013. 12. 30., 2019. 11. 26.]

1.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의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자

**임실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 전문위원 김상기

임실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 수도요금을 감면하되,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20퍼센트,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30퍼센트”를 “경우에 수도요금의 일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경우”를 “경우 : 100분의 20”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경우”를 각각 “경우 : 100분의 30”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심한 장애인”을 “심한 장애인 : 100분의 30”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수급자”를 “수급자 : 100분의 30”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사용량”을 “사용량: 100분의 30”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경우”를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7.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월 사용량 10세제곱미터

제37조제2항 중 “수 있다”를 “수 있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로 한다.

제38조제2항을 삭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33조(수수료)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38조제2항에 따른 정수처 분 해제 수수료: 급수관구경 3 9미터/미터까지 2,000원, 급수 관구경 40미터/미터 이상 4,00 0원	<삭 제>
제35조(요금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을 감면하되,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20퍼센트,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35조(요금등의 감면) ① ----- ----- <u>경우에 수</u> <u>도요금의 일부</u> ----- ----- -----.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u>경우</u>	1. ----- --- <u>경우 : 100분의 20</u>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의 <u>경우</u>	2. ----- ----- <u>경우 : 100분의 30</u>
3. 「식품위생법」에 따른 군수가 지정하는 모범업소, 지방물가 안정관리의 하나로 지정,	3. ----- ----- -----

운영하는 착한가격 업소의 경우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급여, 의료급여 수
급자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세
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또
는 그 배우자의 가정용 사용
량

<신 설>

7.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 ④ (생략)

제37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생략)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
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해
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
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

----- 경우 : 100분의 30

4. -----
----- 심한
장애인 : 100분의 30

5. -----
----- 수급자 : 100
분의 30

6. -----

----- 사용량: 100분의 30

7.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월 사용량 10세제곱미터

8. -----

----- 경우: 100분의
30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7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38조(정수처분)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생 략)

----- 수 있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제38조(정수처분)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현행과 같음)